

기술정보

기술정보지 통권 제74호 (2020년 2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김해종합운동장 조감도 >

목 차

<p>■ 건설 관련 소식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 건설현장 직접 찾아 추락사고예방 안전 캠페인 전개 - 경상남도, 건설현장 화재사고 재발방지 위한 열린 민관협력회의 개최 - 경남도, 2020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교육 실시 - 경남 김해 상동에 '글로벌 스마트물류센터' 착공 <p>■ 국토교통 뉴스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척 본격 시작한다 - 건설기계 검사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줄인다 - 포스트 코로나 경제활력, 건설산업이 선도하겠습니다 -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7% 소폭하락 <p>■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p>■ 신기술 정보 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섭식 뿔침장비로 시공한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위에 유무기 합성 표면보호재를 도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 라인레이저와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된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한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라이닝의 외관조사 기술 - 벽체와 기초 앞굽을 PS강봉으로 일체화한 역형 프리캐스트 옹벽 - 띠철근 사이에 평면상 팔각형의 나선형 보조 띠철근이 연속되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KSS 공법) <p>■ 2020 건설기술심의 현황 38</p> <p>■ 기술인 나눔 정보 4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 시행 일정 -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 업무 처리요령 안내
---	--

건설 관련 소식

경남도, 건설현장 직접 찾아 '추락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 전개

- 스마트 안전장비 및 일체형비계(시스템) 활용 홍보
- 경남도, 안전보건공단(경남지역본부) 합동 캠페인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건설공사 현장 추락사고 예방 근절 등을 위해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됐던 '건설현장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5월 27일 오전 11시, 창원 의창구 동동 일원에서 시공 중인 '한양대학교 한마음국제의료원 건설현장'에서 진행했다.

최근 경남도의 건설재해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해는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20%를 감소한 '사망자수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경남도와 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대응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실시됐다.

참가자들은 건설현장 주변에서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근절 홍보를 진행했으며,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되는 스마트 안전장비 및 일체형 작업발판 활용을 독려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관계자들 스스로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규칙을 실천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건설안전 예방교육'은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응책이라는 인식전환과 이에 따른 안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공사 선정 시 사망만인율 반영비율을 신설·확대한다. 또 안전관리계획 제출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하고, 사망사고·구조물 붕괴 등의 주요사고 발생 시 발주청에게는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승인 받기 전까지 공사 진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상욱 도 건설지원과장은 "해마다 늘어나는 건설공사 현장 추락사고로 부상·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경남도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현장교육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15)

경상남도, 건설현장 화재사고 재발 방지 위한 열린 민관협력회의 개최

- 건설현장 화재문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민관참여 사회적 대화
- 각 분야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담당공무원 등 참석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6월 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도청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열린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담당공무원 등 35명이 참석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김해 부경 양돈 화재사고 등 계속되는 건설현장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이날 회의는 참석자 전원이 의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하기 위한 **의제명확화 토론**과 분임별로 각 의제와 관련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극복방안을 도출하는 **분임별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의 핵심 토론의제는 △건축자재 △현장안전관리 △법제도 개선의 세 분야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왜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지, 현장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경남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발생 후 건축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도민과의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찾아보자는 도지사의 제안으로 개최하고 됐다.”며, “단일한 행정부서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복잡다단한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어나가는 민관협업과 속의 민주주의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경남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경남1번가 운영** 등 도민의 정책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열린 민관협력회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주요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열린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 : 도 사회혁신추진단(O55-211-4753)

경남도, 2020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 교육 실시

- 18일 창원 안전보건공단 대강당, 안전보건공단과 협업체 안전교육 진행
- 도, 시·군 및 유관기관 담당 공무원 및 현장관계자 100여 명 참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8일 창원 안전보건공단 대강당에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0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도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과 현장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실시됐다.

교육은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와 같은 물류·냉동 창고 건설현장의 화재 및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장관리자 및 화재감시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업장 자율재해예방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군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도와 현장관계자의 역량을 높여 현장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제작한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교육 책자'를 배포했다.

이상욱 도 건설지원과장은 “이번 ‘2020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교육’으로, 건설공사 현장 담당공원은 물론 현장종사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 줄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비롯한 안전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남도 건설재해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 사망자 발생수(24명) 대비 20%가 감소한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15)

경남 김해 상동에 '글로벌 스마트물류센터' 착공

- 글로벌물류기업 켄달스퀘어로지스틱스
1600억 원 투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일원에 위치한 '김해 상동일반물류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인 켄달스퀘어로지스틱스가 16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본 물류단지는 상동IC와 국지도 60호선이 연결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상동스마트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경남도의 역점사업인 동북아물류플랫폼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동스마트물류단지 조성은 이번 달에 착공해 내년까지 420억 원을 투입하여 단지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약 1,200억 원의 건축비와 자동화 등 최첨단 물류기술을 적용해 글로벌 스마트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권역의 대표적인 스마트물류단지로 개발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500여 명의 신규 인력창출은 물론 포장, 광고 등 관련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도 항만물류과장은 “글로벌 스마트물류센터 유치로 첨단물류산업 활성화 및 공급거점 확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향후 입주기업에 지역인재가 최우선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위지도>



<조감도>

■ 자료 : 도 항만물류과(O55-211-4134)

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1. 추진 배경

-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 *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설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1년 공공공사 → ’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2. 입법예고 주요내용

- ① 시공자격 결정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영 안 제19조제1항)
 -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을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②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규칙 안 제13조의4)
 - (종합건설사업자→전문공사)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다.
- ③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규칙 안 부칙 제7조)
 -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였다.
 - * (종합→전문) 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 ④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규칙 안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50억 원 미만 → 70억 원 미만('19.3월)
- ⑤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규칙 안 제23조제10항)
 -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

- ⑥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규칙 안 제13조의3)
 -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⑦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영 안 제34조의5, 규칙 안 제28조제6항)
 -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채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 *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20.5.15 일자리위원회)
-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 이라고 예상하며,
-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1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① 시행령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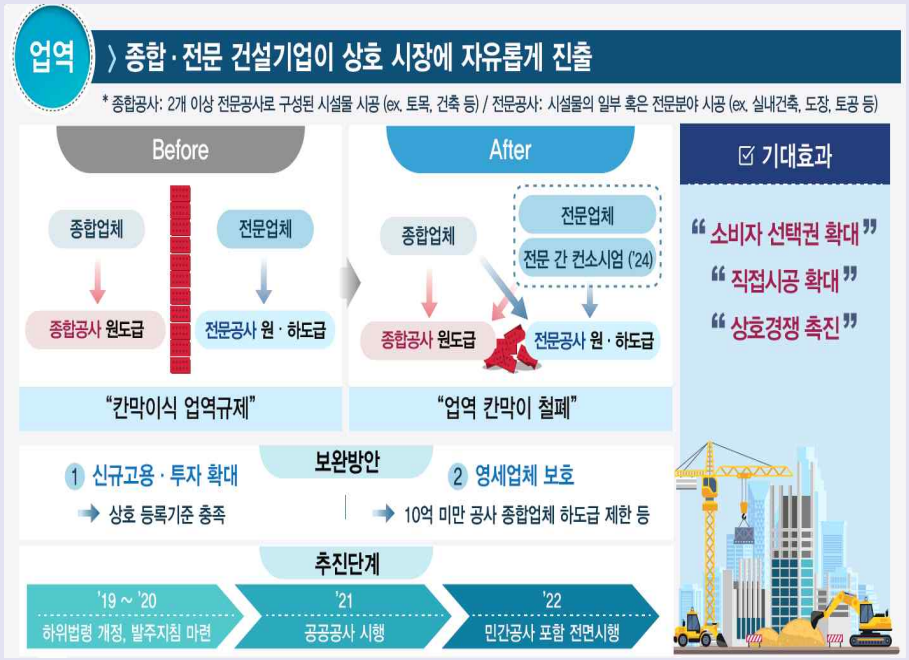
- (발주자 가이드라인) 발주자가 해당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산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
-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확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
- (하도급 제한적 허용) 도급받은 공사금액 중 기술특허공법·실용신안권 등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해 100분의 20이내로 하도급 허용
-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업체 하도급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개월 하도급제한, 재발시 2개월 하도급 제한
- (기타) 건설산업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온라인 건설업 교육 허용,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평가를 위한 위탁근거 마련 등

② 시행규칙 개정안

-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입시 자격요건 및 실적인정) 진입하고자 하는 상대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참여
 - 상대업종의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 적용
- * (종합→전문) 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
 - * (종합→전문) 전문공사 하도급하는 경우 1/2인정, (전문→종합) 종합공사를 하도급 또는 시공 관리 등을 하는 경우 1/2 인정
-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전문공사
- (기타) 임금직불제 적용대상공사 확대(5천만원→3천만원), 가설기자재(비계, 동바리, 거꾸집) 대여대금 보호,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건설업등록 행정정보이용 사무 확대 등

참고 2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주요내용

- (개편원칙) 생산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전문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
 -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전문)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 전면 폐지(건설법 제16조 개정)
- (전문업체→종합공사) 해당 공사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 간 컨소시엄은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
 -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는 '24년부터 허용
- (종합업체→전문공사) 종합업체는 종합업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한 세부 전문공사 원·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 * (토목)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댐, 하천 등 / (건축) 건축법상 건축물
 -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하여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과 물량 하도급*은 금지
 - * 여러 개의棟으로 이루어진 건축공사에서 수개 동을 통으로 하도급
 - 아울러 전문공사 원도급만을 수주하는 영세업체(전문업체 중 약40%)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수주는 ' 24년부터 허용
-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 (등록기준 보완) 입찰등록 마감일 전(수의계약: 계약 前)에 기술자, 자본금, 장비 등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보유*
 - * 시공 중에는 등록기준을 상시 보유 필요
 - ⇒ 신규 고용(기술자), 신규 투자(장비)를 전제로 상대 업역 진출 원칙
 - (직접시공 원칙) 상대 공사를 도급할 경우 전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현실 등을 감안, 제한적 예외* 허용
 - ⇒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생산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제고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O44-201-3497,3514)

건설기계 검사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줄인다

-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제재 강화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국민 검사서비스 질 향상 기대

□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 현재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 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운영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수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따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 (최초 부과액) 2만 원→50만 원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마다 1만원 가산→5만원 가산

②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현재 1차 검사안내→3차 안내로 강화
 (1차) 검사 시작 전→(2차) 검사기간 만료 20일 전→(3차) 검사기간 만료 10일 전

③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④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운영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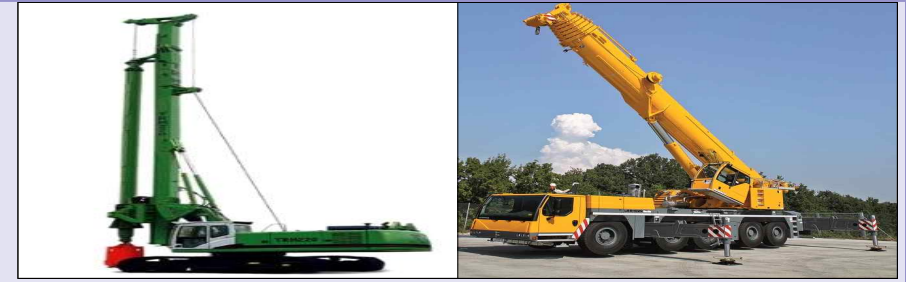
-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영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 자동차의 경우 검사·정비 이행 시까지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100만 원 이하)

- 또한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운영하거나 사용·운영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⑤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 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항타·항발기>

<기중기>

- 또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기령)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일부 기종 검사주기 조정안(예시)>

건설기계	검사주기 조정안	적용대상
항타·항발기	3년 → 1년	1,021 중 581대(57%) 적용
기중기(무한케도식)	3년 → 1년	10,452 중 1,061대(10%) 적용
터널용 고소작업차	2년 → 1년	314대(100%)
도로주행 건설기계	1년 → 10년 이후 6개월	91,144대 중 48,279대(53%)

* 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자동차의 검사주기는 차령(車齡) 2년 초과 시 6개월

⑥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 아울러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한다.

⑦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 처벌 강화

-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 자동차의 경우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⑧ 2002년 이후 동결된 검사수수료 50% 인상

- '02년 이후 인건비는 91.8%, 물가는 47% 상승한데 비해 그간 18년째 동결되어 온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한다.

* 정기검사 기준 55,000원 → 82,500원(27,500원 인상)

-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하여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O44-201-4588, 3537)

포스트 코로나 경제활력, 건설산업이 선도하겠습니다

- 18일 건설의 날 기념식서 그린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비전 제시
- 건설산업 유공자 139명 포상·금탑산업훈장 윤현우·노석순 대표이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6월 18일 (목)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에서 「2020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 **건설의 날**(6.18일)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의 회복을 위해 건설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이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했다.

○ 또한, 이번에는 작년 행사와 다르게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토부박선호 1차관,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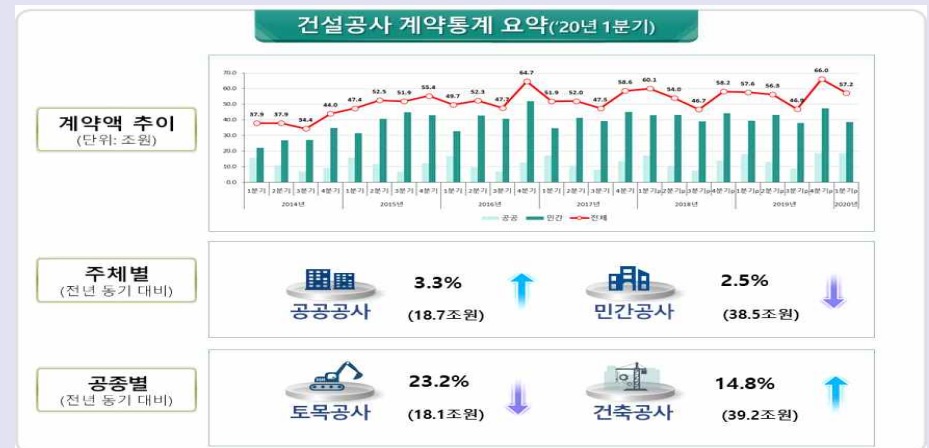
□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해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건설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건설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39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포창**을 수여했다.

○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오랜 기간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현우** (주삼양건설 대표이사)와 **노석순** (원영건설 대표이사)가 수훈의 영광을 안았다.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7% 소폭 하락

총 57조 2천억 원...토목 감소, 건축은 증가

- 올해 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한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 (주체별) 공공공사 계약액은 도로 등 토목과 건축이 모두 증가한 18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전년도 대규모 민자사업의 영향으로 2.5% 감소한 38조 5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분야의 계약액은 전년도 대규모 민자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한 18조 1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 * '19년 1분기 철도와 전철 건설을 위한 대규모 민자사업(2건 약 5.7조 원 규모)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토목 건설이 증가
- 건축 분야는 상업용과 공장 및 작업장용 건축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39조 2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 윤현우 대표이사는 건설근로자 출신 경영인으로서 43년간 국도건설공사 등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초대 민선 충북체육회장으로 회사 내 기술연구소 운영, 창업 이래 27년간 협력업체에 100% 현금결제 등 투명한 상생경영으로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노석순 대표이사는 36년간 반도체공장 등 국가산업시설 구축, 2017·2018년 연속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4천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사업이익금 약 2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또한, 동탑산업훈장은 우철식 (주)태영건설 전무, 철탑산업훈장은 김원열 무경설비(주) 대표이사, 황근순 이에스아이(주) 대표이사, 석탑산업훈장은 이서길 (주)대성건설산업 대표이사, 김임식 남송종합건설(주)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 이외에도 한건수 강산건설중기 대표 등 5인이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으며, 김희선 삼원중공업(주) 대표이사 등 5인이 대통령 표창을, 김종래 건옥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등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특히 이번 기념행사 마무리에 참석자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국가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온 건설인들께 감사”드리며,

○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투자자와 함께 그린 뉴딜 등 역점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O44-201-3504, 3499, 3505)

2. 기업 규모별 계약액

- '20.1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18조 6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 51~100위 기업이 4조 5천억 원(66.2% 증가), 101~300위 기업 5조 4천억 원(7% 증가), 301~1,000위 기업 5조 6천억 원(3.7% 증가), 그 외 기업이 23조 1천억 원(20.9% 증가)을 기록하였다.

* KISCON에 통보된 전년도 계약 금액의 총합 기준으로 기업 규모 순위 재집계

3. 지역별 계약액

- '20.1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25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32조 2천억 원으로 18.1% 증가하였다.
 -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 소재 기업은 31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였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25조 5천억 원으로 5.5% 증가하였다.
-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공사계약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 건설공사계약통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집계·분석한 자료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계약한 1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가 대상임**
-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발표하고 있는 건설 경기 동향조사상의 **건설수주와의 증감 변동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의 차이에 기인함**
 - 건설공사계약통계가 종합·전문건설업체의 1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 전수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반면, 통계청 건설 경기 동향조사는 전전년도 건설업조사 기성액 기준 상위 54%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를 모집단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건설공사계약통계는 도급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직영공사가 제외된 반면, 통계청 조사는 직영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건설공사계약통계는 당해 연도 계약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청 조사는 총 공사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두 기관 간 세부 조사·신고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간 보도자료 공표 일정(*공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019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 2020. 3. 27(금)
 - 2020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 2020. 6. 26(금)
 - 2020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 2020. 9. 25(금)
 - 2020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 2020. 12. 24(목)
- 통계상 수치는 반올림한 것이므로 세부 항목간 수치와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표되는 성장률(증가율)은 원 단위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로 공표된 조 원 단위의 금액으로 계산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붙임1

발주자별·공종별 건설공사 계약액

< 발주자별·공종별 건설공사 계약액 >

(단위: 조 원,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P	'19년 ^P 누계					'20년 ^P 1/4 ^P
							1/4 ^P	2/4 ^P	3/4 ^P	4/4 ^P	
합계	154.2	207.2 (34.3)	214.3 (3.4)	209.9 (△2.0)	219.0 (4.3)	226.9 (3.6)	57.6 (△4.1)	56.3 (4.3)	46.9 (0.5)	66.0 (13.5)	57.2 (△0.7)
주체	공공	42.9 (9.6)	47.0 (△2.1)	46.1 (7.8)	49.7 (△0.6)	58.8 (19.2)	18.1 (5.6)	13.1 (22.1)	8.9 (17.2)	18.8 (34.8)	18.7 (3.3)
	민간	111.3 (43.9)	160.2 (5.0)	168.2 (△4.7)	160.3 (5.9)	169.7 (△0.9)	168.1 (△8.0)	39.5 (△0.2)	43.3 (△2.7)	38.1 (22.6)	47.3 (6.8)
공종	토목(계)*	44.3 (27.6)	56.5 (△8.1)	51.9 (△5.9)	48.8 (19.9)	58.5 (9.5)	23.5 (△0.7)	13.8 (24.1)	10.0 (△0.3)	16.8 (22.6)	18.1 (△23.2)
	건축	110.0 (37.1)	150.7 (7.7)	162.4 (7.7)	161.1 (△0.8)	160.5 (△0.4)	162.8 (1.5)	34.1 (△6.3)	42.6 (△0.9)	37.0 (0.7)	49.2 (10.7)

* '토목(계)'에는 토목, 산업설비, 조경 포함

< 세부공종별 건설공사 계약액 >

(단위: 조원)

구분	토목(계)	토목			건축	
		토목	산업설비	조경		
2014년	44.3	28.5	13.6	2.1	110.0	
2015년	56.5	34.2	20.0	2.3	150.7	
2016년	51.9	33.0	16.7	2.3	162.4	
2017년	48.8	32.4	14.0	2.4	161.1	
2018년 ^P	58.5	31.4	24.8	2.3	160.5	
2019년 ^P	64.1	42.8	18.9	2.5	162.8	
2015년	1분기	18.6	13.7	4.3	0.6	28.8
	2분기	11.7	7.6	3.5	0.6	40.9
	3분기	12.3	4.2	7.7	0.4	39.6
	4분기	13.9	8.7	4.5	0.7	41.5
2016년	1분기	17.8	14.3	2.9	0.6	31.9
	2분기	10.2	7.2	2.5	0.5	42.1
	3분기	10.3	6.2	3.6	0.4	37.4
	4분기	13.6	5.3	7.6	0.7	51.1
2017년	1분기	19.2	14.4	4.1	0.7	32.7
	2분기	10.8	7.5	2.7	0.6	41.2
	3분기	7.6	4.6	2.7	0.4	39.8
	4분기	11.2	6.0	4.5	0.7	47.4
2018년 ^P	1분기 ^P	23.7	14.1	9.0	0.6	36.4
	2분기 ^P	11.1	6.8	3.6	0.7	42.9
	3분기 ^P	10.0	3.7	6.0	0.4	36.7
	4분기 ^P	13.7	6.9	6.3	0.6	44.5
2019년 ^P	1분기 ^P	23.5	19.4	3.5	0.6	34.1
	2분기 ^P	13.8	8.2	4.9	0.7	42.6
	3분기 ^P	10.0	6.1	3.3	0.5	37.0
	4분기 ^P	16.8	9.0	7.1	0.7	49.2
2020년	1분기 ^P	18.1	14.7	2.6	0.7	39.2

붙임2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

〈 현장소재지별 건설공사 계약액〉

(단위 : 조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P	'19년 ^P 누계	'19년 ^P				'20년 ^P 1/4 ^P
							1/4 ^P	2/4 ^P	3/4 ^P	4/4 ^P	
전국	154.2	207.2	214.3	209.9	219.0	226.9	57.6	56.3	46.9	66.0	57.2
수도권	67.3	93.8	99.4	100.5	103.5	117.0	30.4	27.3	26.0	33.2	25.1
서울	21.4	24.1	25.6	22.4	23.3	31.0	9.4	5.7	8.0	7.8	6.6
인천	8.6	11.2	11.3	11.8	12.6	18.1	3.9	4.6	3.6	6.0	2.7
경기	37.4	58.5	62.5	66.3	67.6	67.9	17.1	17.0	14.4	19.4	15.7
비수도권	86.9	113.5	114.9	109.5	115.5	110.0	27.2	29.0	20.9	32.8	32.2
부산	8.3	13.1	10.2	11.9	10.0	9.6	1.9	2.6	1.8	3.3	2.7
대구	5.7	6.4	6.1	5.8	8.0	7.4	1.6	2.2	1.4	2.1	2.0
광주	2.7	3.3	4.4	4.8	4.5	5.6	0.6	1.7	1.0	2.3	1.0
대전	2.2	3.0	2.7	3.6	4.1	4.2	1.3	1.0	0.9	1.0	1.2
울산	4.7	11.7	5.5	5.1	6.6	4.7	1.1	1.3	1.1	1.1	1.2
세종	3.1	3.7	4.3	3.4	3.0	2.1	0.4	0.7	0.4	0.7	0.5
강원	6.4	7.4	8.9	8.1	17.0	8.3	2.2	2.4	1.6	2.1	2.3
충북	5.7	8.1	6.6	9.3	8.5	9.1	2.2	2.7	1.7	2.5	2.9
충남	11.8	12.1	12.4	12.9	12.3	12.5	3.2	2.7	2.7	3.8	3.9
전북	5.2	6.6	6.2	7.2	6.8	7.4	2.1	1.8	1.2	2.4	2.7
전남	7.1	7.7	8.2	9.5	10.8	14.7	3.8	4.2	2.3	4.4	3.5
경북	10.1	12.6	11.8	11.4	10.8	10.4	2.8	2.7	1.8	3.2	3.6
경남	10.9	13.4	20.7	11.9	9.0	10.4	2.9	2.2	2.1	3.1	3.8
제주	3.1	4.3	7.0	4.6	4.2	3.7	1.0	0.8	0.9	0.9	0.8

〈 본사소재지별 건설공사 계약액〉

(단위 : 조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P	'19년 ^P 누계	'19년 ^P				'20년 ^P 1/4 ^P
							1/4 ^P	2/4 ^P	3/4 ^P	4/4 ^P	
전국	154.0	207.0	214.0	209.7	218.7	226.7	57.6	56.3	46.9	66.0	57.2
수도권	87.8	125.4	129.0	123.9	126.4	133.8	33.4	33.7	28.5	38.2	31.7
서울	57.5	84.8	81.9	75.3	81.3	77.9	18.6	20.7	17.3	21.3	18.1
인천	7.6	8.7	9.9	9.4	8.6	10.1	2.4	2.6	1.8	3.3	2.3
경기	22.7	32.0	37.2	39.2	36.5	45.8	12.4	10.4	9.4	13.6	11.2
비수도권	66.2	81.6	85.0	85.8	92.3	92.9	24.2	22.6	18.4	27.8	25.5
부산	8.5	9.6	10.3	10.8	10.1	9.3	2.4	2.1	1.9	2.8	2.7
대구	3.3	4.9	4.7	5.3	5.2	5.0	1.2	1.3	0.9	1.6	1.2
광주	4.7	6.1	5.6	4.7	4.9	5.6	1.0	1.0	1.9	1.7	1.6
대전	3.2	3.7	4.1	4.3	5.1	5.5	1.1	1.3	1.0	2.1	1.3
울산	1.7	2.3	2.4	2.6	2.6	2.8	0.7	0.7	0.6	0.8	0.9
세종	1.4	1.8	1.0	1.0	0.7	1.2	0.2	0.2	0.1	0.7	0.6
강원	2.8	3.6	3.5	4.0	4.3	4.5	0.9	1.3	1.0	1.4	1.1
충북	2.9	3.1	3.7	4.3	4.6	5.2	1.3	1.4	1.1	1.4	1.4
충남	4.4	4.8	5.2	6.0	6.5	7.2	2.0	1.9	1.2	2.0	1.8
전북	3.7	3.7	4.3	5.2	5.3	6.0	1.4	1.3	1.3	2.0	2.3
전남	10.6	14.0	15.2	15.3	15.3	16.4	4.5	4.1	2.6	5.1	4.1
경북	10.5	13.1	12.7	11.8	15.3	13.7	4.7	3.4	2.5	3.1	3.1
경남	6.4	7.9	8.2	7.8	9.5	8.2	2.2	2.0	1.7	2.3	2.6
제주	2.2	3.0	4.3	2.7	2.9	2.3	0.6	0.5	0.5	0.6	0.7

* '본사소재지' 기준은 기업규모별 계약액과 같이 비건설업이 제외된 업체별 통보액 기준으로 집계되어, 합계가 건설공사계약 총액과 소수점 단위 차이가 있음

붙임3

기업규모별 건설공사 계약액

(단위: 조 원,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P	'19년 ^P 누계	'19년 ^P				'20년 ^P 1/4 ^P
							1/4 ^P	2/4 ^P	3/4 ^P	4/4 ^P	
합계	154.0	207.0	214.0	209.7	218.7	226.7	57.6	56.3	46.9	66.0	57.2
1~50위	64.9	96.1	92.9	86.2	90.7	92.5	25.3	21.1	17.7	28.4	18.6
51~100위	7.9	12.5	16.0	14.9	12.6	14.2	2.7	3.5	2.3	5.7	4.5
101~300위	14.0	18.2	18.6	19.1	18.3	17.7	5.0	4.0	4.0	4.7	5.4
301~1,000위	15.1	18.9	19.7	19.3	17.5	19.4	5.4	5.4	4.0	4.6	5.6
1,000위 ~	52.1	61.3	66.9	70.1	79.7	82.8	19.1	22.4	18.9	22.5	23.1

* 본 통계는 '공사별' 건설공사대장 통보액을 '업체별'로 재집계하여, 합계가 건설공사계약 총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전년도 계약금액의 총합 기준으로 기업규모 순위 재집계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관(O44-201-4597, 496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공사 별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별점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별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무사망사고’ 및 ‘현장관리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계의 지속적인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별점 측정기준 조정, 별점 심의절차 도입 및 별점부과 기간의 정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점측정기준 조정(별표 8)

- 1) 구조물의 중요도 및 부실의 정도에 따라 별점을 체계화
- 2)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경우 별점기준 삭제
- 3) ‘소홀히’, ‘불성실’,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의 명확화
- 4)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을 신설하여 현장여건을 소명할 기회 부여

나. 공정한 별점부과를 위해 위원회 심의절차 도입(제87조제5항)

다. 별점 부과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의(제87조제8항)

라. 공동도급 시 도급비율별로 별점 부과토록 현행유지(제87조제2항)

마. 인센티브 제도 도입(별표8)

- 1) 점검을 많이 받은 업체 중 별점부과율이 20%이하인 경우 0.2~1점 경감
- 2)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에 20~59% 별점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thkwak@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6, 044-201-4593,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 2020 - 76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을 위해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2018. 12. 18 공포, 2021. 12. 19 시행), 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자의 건설공사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나.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안 제31조의2 신설)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함이 원칙이나 신기술·특허 등의 공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복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도록 함.

다. 임금체불제 적용 공공기관 확대 (안 제34조의5 제1항 신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

를 기타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자 함

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및제87조제1항제5의2호 신설)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청년층 진입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전문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마.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안 별표 3의2 제2호 마목 및 바목 신설)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고 노무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고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1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12호, 2020. 5.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용역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 등을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2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실적 관리 대상이 되는 용역과 그 관리 절차를 정하고,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을 위한 전문관리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의 일시중지 사유를 추가하고, 품질관리계획 등에 대한 심사 결과 확정 절차 등을 정하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실적 관리(제45조제1항 신설, 제45조제3항)
 - 1)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실적 관리 대상이 되는 용역을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 및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과 그 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나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정함.
 - 2) 건설공사 인·허가기관은 실적 관리 대상이 되는 감리용역에 대해서 그 용역계약을 체결·변경하거나 용역을 준공한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관련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나.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제86조의2 신설)
 - 1)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에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자문 및 사후평가 수행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을 위한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위탁함.
- 다. 건설공사현장 등 점검을 통한 건설공사의 일시중지(제88조제4항)
 -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건설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게 함.

라. 품질관리계획 등에 대한 심사 결과 확정(제9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확정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자는 심사 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인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해야 함.

마.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추가(제101조의2제1항)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에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및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71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을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통보 및 공개”를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통보·공개”로 한다.

-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용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건축공사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의 용역계약을 체결·변경하거나 용역을 준공한 경우
2. 제1항제3호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를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제59조제3항제3호 중 “확인”을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5장제1절에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자문
2. 사후평가 수행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평가 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업무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업무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제88조제1항제4호 중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을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가.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다.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8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사중지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급자재비”를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로 한다.

제9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④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3호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55조제2항”을 “법 제55조제2항 전단”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제9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을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기초용 강판,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으로 한다.

제101조의2제1항에 제1호의2,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제10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제117조제1항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중전의 나목)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를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으로, “감리용역”을 “건설기술용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중전의 다목) 중 “제45조제4항 및 제5항”을 “제45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중전의 라목) 중 “제45조제7항”을 “제45조제9항”으로 한다.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

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공개

별표 8 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제5호가목 1.11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건설기술용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 1.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미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다)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1 또는 2

별표 8 제5호가목 1.13 나)의 주요부실내용란 중 “미달한”을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2.7 나)의 주요 부실내용란 중 “미달하였는데도”를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하였는데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7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2017년 5월 27일부터 2020년 5월 26일까지의 기간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제3조(기본설계에 대한 용역평가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완료되는 기본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현장 등 점검에 따른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제10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주요 부실내용부터 적용한다.

신기술 정보

건·습식 뿔칠장비로 시공한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위에 유·무기 합성 표면보호재를 도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 고시번호

- 제2020-302호(2020.4.3.)

□ 신기술 개발자

- (주)이산, 리플래시기술(주), (주)케이에스씨건설 김상철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85
- 기술분류 :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 범위

- 건식 분체 이송장비와 습식 분사장비를 결합한 뿔칠시공장비를 사용하여 단면 복구용 모르타르를 타설한 후 복구 단면 표면에 유·무기 합성 표면보호재를 도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 내용

- 이 신기술은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보수 단면에 건식 분체 이송장비와 습식 분사장비를 결합한 뿔칠시공장비를 사용하여 합성 중공아크릴, 천연실리카, 마이크로 섬유,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을 혼입한 단면 복구용 모르타르를 타설한 후 그 위에 표면보호와 모체와의 결합력이 향상된 유·무기 합성 표면보호재(α -구조 아크릴 수지 및 무기재료 분말)를 도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 보호기간

- 2020-04-03 ~ 2028-04-02



<신기술 시공순서>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13)

신기술 정보

라인레이저와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된 터널 스캐닝시스템을 이용한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라이닝의 외관조사 기술

□ 고시번호

- 제2020-356호

□ 신기술 개발자

- (주)케이엠티엘, (주)케이에스엠기술(주), 백양엔지니어링(주)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87
- 기술분류 : 토목 > 터널 > 터널 유지보수

□ 범위

- 촬영영역의 왜곡을 식별하기 위한 라인레이저와 화각 조절이 가능한 16대의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된 광학식 터널 스캐너를 10km/hr의 속도로 주행시키면서 도로 및 철도 터널 내부 라이닝의 전단면 영상을 확보하고 이미지 추출의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터널 라이닝의 결함손상 정보(균열폭 0.1mm 이상)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기술

□ 내용

- 이 신기술은 도로 및 철도 터널 라이닝의 균열 등 결함손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촬영영역의 왜곡을 식별하기 위한 라인레이저와 화각 조절이 가능한 16대의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된 광학식 터널 스캐너를 10km/hr의

속도로 주행시키면서 터널 내부 라이닝의 전단면 영상을 확보하고 왜곡 보정, 접합 및 이미지 추출의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터널 라이닝의 결함손상 정보(균열폭 0.1mm 이상)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기술이다

□ 보호기간

- 2020-05-01 ~ 2028-04-30

①사전조사 및 현장답사	④장비점검/이동 및 사전셋팅	③동영상 촬영 및 전송
		
조사대상 터널의 설계정보 및 조사환경 수집, 분석	구상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후 현장이동	스캐닝 장비 최종 세팅 후 촬영 및 영상 데이터 전송
④영상집합	⑤이미지 추출	⑥균열 추출
		
동영상의 동기화 및 왜곡보정 후 영상의 집합	집합된 영상으로부터 이미지 추출 후 원점일 일고리틀을 이용한 구간 단위 평면전개 이미지 생성	평면전개 이미지로부터 균열인식 및 균열정보 생성

<신기술 시공절차>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13)

신기술 정보

벽체와 기초 앞굽을 PS강봉으로 일체화한 역T형 프리캐스트 옹벽

□ 고시번호

- 제2020-405호(2020.05.28.)

□ 신기술 개발자

- (주)강탄산업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88
- 기술분류 :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 범위










- 높이 7.0m 이하 콘크리트 옹벽 벽체와 기초 뒷굽을 공장에서 일체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기초 앞굽을 PS강봉의 긴장력으로 강결하는 직접기초형식의 역T형 프리캐스트 옹벽 공법

□ 내용

- 이 기술은 공장에서 벽체와 기초 뒷굽을 일체로 제작하여 차량 운반이 가능하게 하고, 현장에서 PS강봉(Prestressing Steel Threadbar)으로 긴장력을 도입하여 기초 앞굽을 강결함으로써 철근콘크리트 옹벽(높이 7.0m 이하)을 완성하는 직접기초형식의 역T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옹벽 공법임.

□ 보호기간

- 2020-05-28 ~ 2028-05-27

① 옹벽 생산	② 콘수 및 적재	③ 옹벽 운반
		
• 강제 Mold 셋팅,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 완성 제품의 외관, 치수등의 검수후 적재	• 통과 높이 및 적재 중형률 고려한 적재 및 운반
④ PC 옹벽 거치 (본체)	⑤ 앞굽 거치	⑥ 앞굽 긴장, 불합
		
• 운반 중형 및 주변 안전공간 확보하여 옹벽 인장, 설치	• 앞굽 정착면 에폭시 도포 및 정위치 거치	• 전승 인장 장비에 의한 강봉 긴장 및 정착
⑦ 드레인 보드 설치	⑧ 뒷재움 시공	⑨ 설치 완료
		
• 연립 장벽 불합 및 배수층 드레인 보드 설치	• 대형 장비에 의한 뒷재움 시공	• 설치 현황 점검 및 정리

<신기술 시공절차>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313)

신기술 정보

띠철근 사이에 평면상 팔각형의 나선형 보조 띠철근이 연속되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KSS 공법)

□ 고시번호

- 제2020-406호(2020.05.28.)

□ 신기술 개발자

- 고려열연(주), 대림산업(주), (주)허브구조엔지니어링,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89
- 기술분류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 기공 및 조립,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 범위

- 기둥의 모서리에 배치되는 주철근을 횡구속하는 평면상 사각형 형상의 띠철근 사이에 기둥의 각 변에 배치된 주철근을 횡구속하도록 일정한 피치를 갖되 평면상 팔각형 형상을 이루는 나선형 내부 보조띠철근이 연속되게 사전제작 및 시공되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

□ 내용

- 이 기술은 띠철근 사이에 평면상 팔각형의 고강도 나선형 보조띠철근이 연속된 나선형

띠철근을 이용하여 심부 콘크리트의 구속효과와 주철근의 좌굴강도를 증대시켜 기둥의 연성능력과 에너지 소산능력을 향상시키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에 관한 공법임.

□ 보호기간

- 2020-05-28 ~ 2028-05-27



<신기술 시공절차>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O31-389-6313)

건설기술심의 현황

2020년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1)

일시	요청사항	공사명 (용역명)	공사 및 용역 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제1회 '20.1.15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사업	· 위 치 : 고성군 회화면 일원 · 공사내용 : 수영장 및 생활관건립 · 공 사 비 : 151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1년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공사	· 위 치 : 양산시 유산동 일원 · 공사내용 : 기반시설정비·확충 · 공 사 비 : 269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3년	양산시 (투자유치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금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천정비 L=3.9km · 공 사 비 : 157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2년	경상남도 (하천안전과)	조건부 채택
제2회 '20.2.27 (서면심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 위 치 : 밀양시 무안면일원 · 공사내용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78톤/일 · 공 사 비 : 268억원 · 공사기간 : 2019년~2023년	밀양시 (환경관리과)	기본설계 기술제안 (가중치기준)
	설계공모 세부평가기준	화곡마을물순환센터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 위 치 : 김해시 화곡동 일원 ·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 역 비 : 5.1억원 · 용역기간 : 2020. 4. ~ 2020. 9.	김해시 (하수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일원 · 공사내용 : 하수처리시설 증설1식 · 공 사 비 : 206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3년	거창군 (수도사업소)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묘산(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위 치 : 합천군 묘산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수처리시설 증설1식 · 공 사 비 : 165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3년	합천군 (상하수도과)	조건부 채택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일원 · 공사내용 : 교량 및 도로포장1식 · 공 사 비 : 130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2년	밀양시 (도시재생과)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O55)211-2921

2020년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2)

일시	요청사항	공사명 (용역명)	공사 및 용역 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제3회 '20.3.23	실시설계 타당성	용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위 치 : 밀양시 단장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천개수(L=4.2km) 및 교량 재가설 5개소 · 공사비 : 146억원 · 공사기간 : 2020년 ~ 2022년	밀양시 (안전재난관 리과)	조건부 채택
	입찰안내서	창원 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공사	· 위 치 : 창원시 현동 일원 · 공사내용 : 공공주택 및 부대시설 건립 (12개동 1,193세대) · 공사비 : 1,508억원 · 공사기간 : 2021년 ~ 2024년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적정성 심의 *국토교통부 평가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조건부 채택
제4회 '20.4.20	일괄입찰 기본설계 심의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 위 치 : 김해시 구산동 · 공사내용 : 종합운동장건립 · 공사비 : 1,558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2년	김해시 (체육지원과)	기본설계 적격
제4회 '20.4.22 (서면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김해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 위 치 : 김해시 일원 · 용역내용 :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 용역비 : 498백만원 · 용역기간 : 2020년 ~ 2021년	김해시 (도로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밀양지구(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위 치 : 밀양시 산내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천개수 L=6.25km · 공사비 : 265억원 · 공사기간 : 2020년 ~ 2024년	밀양시 (안전재난관 리과)	조건부 채택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삼천포공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함안군 칠원읍 일원 · 공사내용 : Q=6,500t/일 · 공사비 : 358억원 · 공사기간 : 2020년 ~ 2023년	함안군 (상하수도사 업소)	조건부 채택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 위 치 : 창원시 북면 일원 · 공사내용 : 공공도서관 건립 · 공사비 : 138억원 · 공사기간 : 2020년 ~ 2021년	창원시 (건축경관과)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2921

2020년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3)

일시	요청사항	공사명 (용역명)	공사 및 용역 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제6회 '20.5.27	실시설계 타당성	통영 광도(안정,황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 위 치 : 통영시 일원 · 공사내용 : 오수관로, 맨홀펌프장 설치 등 · 공사비 : 185억원 · 공사기간 : 2020년 ~ 2025년	통영시 (상하수도과)	조건부 채택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남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남해도 II)	· 위 치 : 남해군 일원 · 공사내용 : 배·급수관로 신설 및 가압펌프장 등 · 공사비 : 143억원 · 공사기간 : 2020년 ~ 2023년	남해군 (상하수도과)	조건부 채택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함안군 강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함안군 범수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수처리시설 증설(Q=240m3/일) 등 · 공사비 : 152억원 · 공사기간 : 2020년 ~ 2022년	함안군 (상하수도 사업소)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경상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 위 치 : 경상남도 전역 · 용역내용 :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최소유지 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 · 용역비 : 7.6억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건설지원과	기본설계 적격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김해시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	· 위 치 : 김해시 전역 · 용역내용 : 도로하부 공동조사 L=358km · 용역비 : 8.8억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김해시 (하수과)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창원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 위 치 : 창원시 일원 · 용역내용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중 기계획 등 · 용역비 : 3.5억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창원시 (교통물류과)	조건부 채택
제7회 '20.6.24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삼천포지구(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 위 치 : 사천시 일원 · 공사내용 : 오수관로, 맨홀펌프장 설치 등 · 공사비 : 424억원 · 공사기간 : 2020년 ~ 2023년	사천시 (상하수도사 업소)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덕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 위 치 : 창녕군 덕곡면 일원 · 공사내용 : 오수관로, 맨홀펌프장 설치 등 · 공사비 : 179억원 · 공사기간 : 2020년 ~ 2022년	창녕군 (수도과)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2921

□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정기검정 시행일정

등급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서류제출 (필기시험합격자결정) 방문제출(휴일제외)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시 험 시 행	합격(예정)자 발 표 요		원서접수 인 터 넷	시 험 시 행	합격자 발 표
	제121회	3.16~3.17, 3.19~3.20	4.11(토)	6.5	6.8~6.17 (휴일제외)	6.8~6.11	7.18 ~7.28	8.14
	제122회	6.9~6.12	7.4(토)	8.28	8.31~9.9 (휴일제외)	8.31~9.3	10.17 ~10.27	11.13
기능장	제67회	3.10~3.13	4.5(일)	4.10	4.13~4.23 (휴일, 4.15 제외)	4.13~4.14, 4.16~4.17	6.13 ~6.28	7.10(1차) 7.17(2차)
	제68회	6.2~6.5	7.4(토)	7.17	7.20~7.29 (휴일제외)	7.20~7.23	8.29 ~9.13	9.25(1차) 10.8(2차)
기사 (산업기사·서비스)	제1회					4.06~4.09	5.9~5.24	6.12~6.26
	제1,2회	5.12~5.18	6.6~6.21	6.26	6.29~7.08	6.29~7.02	7.25~8.15	8.7 8.28 9.11
	제3회	7.28~7.31	8.22	9.11	9.14~9.23	9.1~9.17	10.17~11.01	11.13
기능사	제1회	1.14~1.17	2.9~2.15	2.28	해당없음	3.2~3.5	4.4~4.19	4.29(1차) 5.8(2차)
	제2회	3.24~3.27	4.19~4.25	5.8	해당없음	5.11~5.14	6.13~6.28	7.10(1차) 7.17(2차)
	제3회	6.2~6.5	6.28~7.4	7.17	해당없음	7.20~7.23	8.29~9.13	9.25(1차) 10.8(2차)
	제4회	9.8~9.11	10.11~10.17	10.23	해당없음	10.26~10.29	11.28~12.13	12.24(1차) 12.31(2차)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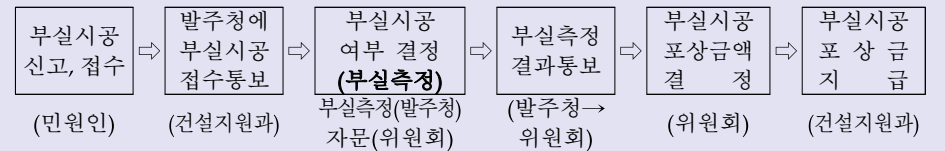
I. 부실시공 신고대상

-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한 도금액 10억이상 건설공사
- ※ 대상공사 : 건설정보(www.gyeongnam.go.kr) 홈페이지에 게재

II. 부실시공 내용

- 주요 구조물의 시공 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등

III. 처리절차



IV. 포상금 지급기준

- 부실시공 1등급 (벌점 3점) : 1,000만원 이하
- 부실시공 2등급 (벌점 2점) : 600만원 이하
- 부실시공 3등급 (벌점 1점) : 200만원 이하
-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
- ※ 부실벌점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

V. 신고방법(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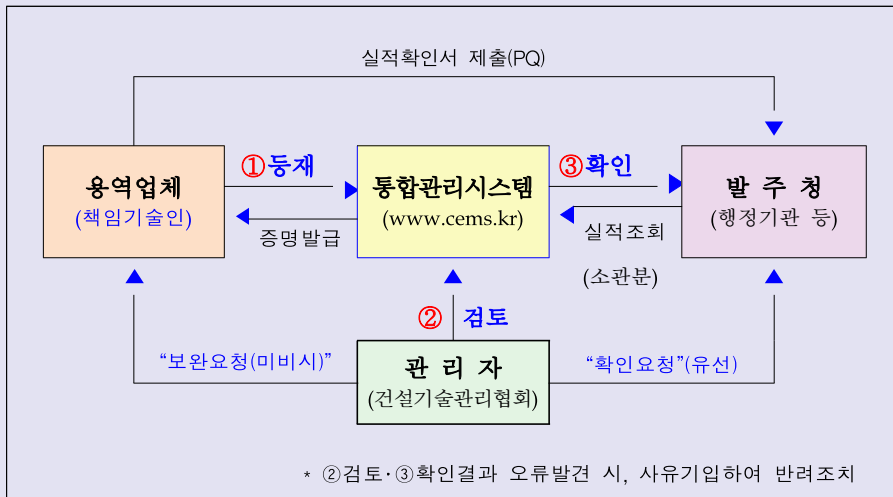
-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2922~2926
-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2919
- 신고서식 : 상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26)

□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관련 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 입력대상 용역 :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 입력시기 : 용역의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 이내 기술자 변경시 수시 입력
- 시스템 사용자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사업관리담당자
용역사 대표자 및 용역책임자(원도급·하도급)
- 시스템 접속 URL : www.cems.kr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는 '14. 5. 23. 이후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만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실적 관리 및 확인 가능함.
- 주요 조회가능 항목
 - 건설기술용역 수주 및 수행실적(규모별, 공종별, 업체별)
 - 참여기술자 현황(중복배치, 중첩도, 교체현황 등)
 -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한 교체빈도
 - 제재현황(영업정지, 과징금, 벌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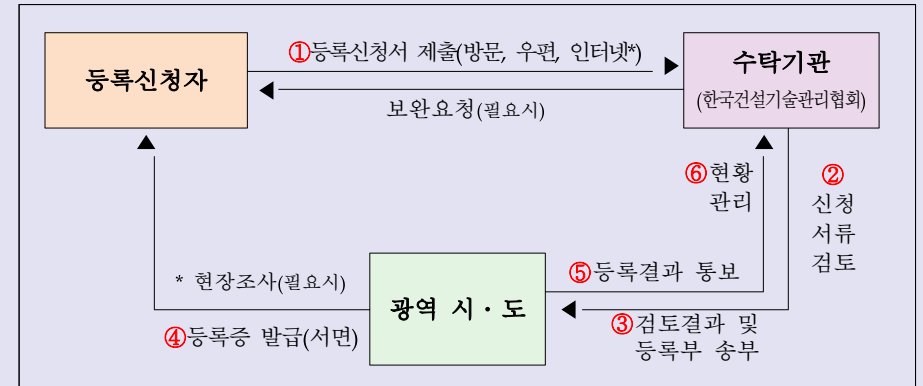
※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



■ 자료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02-3460-8641)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①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25)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02-3460-8654)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정보>도시/교통/건설>건설정보>기술정보지)

계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2923~6

FAX : (055)211-2919

e-mail : naminan@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